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공사업의 허가) ① 법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3. 설립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
4.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

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심사 기준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사항으로 구성하고, 심사기준에 대한 배점은 해당 심사사항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심사사항별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되,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한다.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4조 (허가기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해당 사업자에게 최초로 허가하는 경우의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재허가)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심사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

1. 이전 허가 당시 사업계획, 허가조건 또는 기타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2.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내용·횟수와 이에 대한 이행 여부

③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6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서 허가신청법인의 재정능력, 전기통신설비의 구축수준 및 시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2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검영금지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제8조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또는 주주변경(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여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 경우 사업의 양수자는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업권역

4. 허가조건

②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9조(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상황평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자문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정경쟁정책 수립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의 검토 등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수요대체성·공급대체성, 서비스 제공범위 및 지리적 범위, 이용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시장 또는 관련시장을 확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경쟁사업자 수, 경쟁사업자 상호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콘텐츠 수급관계 등 시장구조

2.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이용자의 대응력

3. 사업자의 요금·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시장성과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요금·품질 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관련 시장상황 등

⑤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의 실시에 관한 일부 업무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에 관한 강의나 연구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 방송·통신 또는 미디어 사업에 관련된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방송·통신 또는 공정경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⑧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거부·제한되어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비제공의 거절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 또는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접근·이용에 관한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전계획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경우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비제공의 중단·제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2. 천재·지변, 사업의 휴지·폐지 및 기술적 장애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요청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사용 용도를 해당 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청 설비의 제공가능여부, 제공가능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제공가능 통보를 한 경우 그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대가는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은 전파연구소장이 고시한다.

제13조 (과징금)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 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

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금지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및 승인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바에 따라 송신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에 한한다)를 편성의 변경이 없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다만,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부가통신사

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신고한 바에 따라 제공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② 법 제8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송신 또는 제공하는 콘텐츠를 편성의 변경이 없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신고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대표자명
2. 상품(서비스)명
3. 콘텐츠 공급분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주요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14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년도 3월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본문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승인받은 방송콘텐츠 공급분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고시한다.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또는 거래의 거절·중단·제한으로 인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세부기준과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1조의2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0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

령」 제53조제1항제2호 가목 중 “이상으로 할 것”은 “이상으로 할 것(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보고, 「방송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로 보며,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한한다)”로 본다.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69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5항 본문·제5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 및 제50조제4항 제1호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④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1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같은 조 제4항 중 “방송사업자”, 제57조제1항제3호 중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자”로 본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2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중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⑥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3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제2호 라목·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가목·같은 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같은 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4조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사업자”는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6조의3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60조의5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는 각각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⑨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 및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제21조 (사업자의 출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허가받은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발생한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정상태·가입자수 및 이용요금과 사업운용의 공공성 등을 참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연금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납부기한 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납기관에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출연금의 징수, 산정 및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22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동일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과징금)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4조 (과태료)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신청인의 성명, 과태료 부담자와의 관계, 과태료 처분내역, 이의신청 사유, 신청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액

-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 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 : 매출액의 1000분의 15 이하
- 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행위 : 매출액의 100분의 2 이하
- 라.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5억원 이하

2. 과징금의 산정절차 및 기준

가. 과징금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1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위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정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되,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 그 밖에 과거실적·사업계획·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2) 필수적 가중

가)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중한 금액을 합산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기간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차등 가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가중한다.

3) 추가적 가중·감경

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 변화 등 위반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한다.

3. 세부기준

기준금액,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의 각 단계별 세부 고려사유와 가중·감경 비율에 대한 세부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I. 서비스 제공 거부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특정 이용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 요청을 설비의 부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의 체납 등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만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II.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또는 이용요금 청구행위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이용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여 해당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III. 이용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행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IV.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의 이용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장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
2. 특정 이용자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서비스 안내의 차별, 특정 서비스 판매사실의 누락 등을 통하여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역무 또는 방송역무 등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이용자보다 부당하게 차별하여 유리한 이용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의 콘텐츠공급계약 체결을 거부하도록 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수익 배분 또는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현저한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VI.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설이나 장비를 손괴하는 등 부

당하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서비스제공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또는 자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요금, 이용조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이용자와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는 내용의 배타적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VII.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접근의 거절·중단·제한 행위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2.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계약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 중인 전주, 관로, 통신구 등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전주, 관로, 통신구 등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하는 것과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별표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허가의 취소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6개월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사업정지 3개월

- 비 고
1.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가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사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업정지 기간동안 사업의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4]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23조제2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 징 금 금 액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25조제1항	5억원 이하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0분의 15 이하 (다만,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로 한다. 이하 같다)
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